

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군산시장 *문 동 선*

2011년 11월 30일

군산시 조례 제1006호

##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

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별표1 및 별표2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[별표 1]**

**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 관련)**

구 분	일 반 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
비율	81% 이상	16% 이내	3% 이내

비 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

**[별표 2]**

**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 관련)**

**1. 일반직 공무원**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1% 이내	7% 이내	26% 이내	33% 이내	26% 이내	7% 이상

비 고 :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**2. 기능직 공무원**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율	4% 이내	16% 이내	26% 이내	31% 이내	23% 이상

비 고 :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**3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**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비 고 :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**4. 별정직 공무원**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율	5%	80% 이내	10% 이내	5%	-

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【별표 1】</b>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일반직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기능직·고용직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별정직·정무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1%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 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</li> <li>2.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</li> </ol> <p><b>【별표 2】</b>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 관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기능직 공무원</li> </o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6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7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8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9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10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7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1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 고 :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(생략)</li> <li>4. (생략)</li> </ol>	구 분	일반직	기능직·고용직	별정직·정무직	비율	81% 이상	16% 이내	3% 이내	구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비율	4% 이내	16% 이내	22% 이내	27% 이내	31% 이상	<p><b>【별표 1】</b>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일반직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기능직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별정직·정무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1% 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 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</li> <li>2.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</li> </ol> <p><b>【별표 2】</b>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 관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기능직 공무원</li> </o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6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7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8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9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10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비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6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1%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3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 고 :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	구 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	비율	81% 이상	16% 이내	3% 이내	구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비율	4% 이내	16% 이내	26% 이내	31% 이내	23% 이상
구 분	일반직	기능직·고용직	별정직·정무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81% 이상	16% 이내	3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4% 이내	16% 이내	22% 이내	27% 이내	31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81% 이상	16% 이내	3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6급	7급	8급	9급	10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4% 이내	16% 이내	26% 이내	31% 이내	23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1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군산시장 

2011년 11월 30일

군산시 조례 제1007호

##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

『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 관한 조례』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